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」 개정요약서

1.	颜	젔	규	칰	명
ㅗ.	0	0			O

□ 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」 (관세청훈령 제2267호, 2023. 5. 23.)

2. 개정 사유

□ 인천세관 직제개편에 따른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업무 조정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·보완

3. 주요 개정내용

- □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업무 조정(§3①)
 - 관할지세관이 인천공항본부세관, 평택직할세관인 경우
 인천본부세관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
- □ 환급후심사 대상 **선별** 건 **처리기간 명확화**(§6④)
 - 환급후심사 대상 선별된 건은 **선별일부터 15일 이내**에 환급신청인 에게 **관련 서류**를 제출 요구하도록 하여 장기 미결 방지
 - 세관장의 서류제출 요구에 따른 제출 기간을 7일→15일로 확대
 하여 환급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

- □ 기타 개정사항
 - ㅇ 알기 쉬운 법률용어 반영
 - 선(기)용품 → 선박(항공기)용품(§25③), 명기 → 작성(별지1)
- 4.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5. 규제대상 여부 : 해당 없음
- 6. 시행일자 : 2023. 5. 23.